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1월 27일, 김원이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의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의원)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대통령이</u> 위촉하는 사람 <신설> ④ ~ ⑦ (생략)	기능) ① ----- ----- ----- <u>국무총리</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 <u>국무총리</u>가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u>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

현행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음¹⁾.

- 1)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6년 2월 기준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2인, 당연직 정부위원은 14인,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은 1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본회의는 보통 임기인 2년 내 5차례 내외로 개최되고 있음(참고자료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구성
위원장(2)	국무총리, 이광형 KAIST 총장
정부위원(14)	지식재산처장, 재정경제부·과기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기획예산처장,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민간위원(19)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그동안 「지식재산 기본법」 및 위원회 관련 업무의 담당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는데,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청’을 국무총리 산하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후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등 IP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 및 위원회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됨.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은 관련 업무의 담당 부처가 국무총리 산하 부처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 및 민간위원의 위촉 주체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률 정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 되는 경우 대통령 소속인 경우와 비교할 때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은 다소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 및 감독권자로서 국무총리가 각 부처를 직접 지휘·조정하게 되어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실무 중심의 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스스로 위촉하는 입법례(참고자료 2)가 다수 있으므로, 유사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기관을 ‘간사’라고 하는데²⁾, 안 제7조제4항은 위원회 간사 규정을 신설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이 맡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간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관례상 운영되는 간사 제도의 근거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처장을 간사로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총괄·조정 부처로서 지식재산처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6기 ('22 ~ '24년)

회의차수	안전번호	안전내용	주관부처
제31차 (‘22.3.31)	136호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지재단*
	137호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단
제32차 (‘22.5.31)	138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지재단
	139호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지재단
	140호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지재단
제33차 (‘23.3.23)	141호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	지재단
	142호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안)	특허청
	143호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	특허청
	144호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	과기부
제34차 (‘23.3.31)	145호	’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지재단
	146호	’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단
	147호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지재단
	148호	’23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지재단
	149호	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	지재단
제35차 (‘23.12.22)	150호	’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지재단
	151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지재단

* 지재단(지식재산전략기획단):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

□ 7기 ('24년 ~)

회의차수	안전번호	안전내용	주관부처
제36차 (‘24.3.19)	152호	’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지재단
	153호	’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단
	154호	’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지재단
제37차 (‘24.12.12)	155호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확대방안	지재단
	156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안)	지재단
	157호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25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정책과제(안)	지재단
	158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재단
제38차 (‘25.3.28)	159호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지재단
	160호	’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6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단
	161호	’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지재단
	162호	한-아세안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지재단

참고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입법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가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u>국무총리</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대통령이</u> 위촉하는 사람	2. ----- ----- <u>국무총리가</u> -----
<u><신 설></u>	<u>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u>
④ ~ ⑦ (생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